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1. 예산안총괄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12월 20일 ----- 사하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05년 12월 23일
 다. 상 정 일 자 : 제13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26)
 상정심사(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황해룡 기획감사실장)

가. 제안이유

- 세입예산은 재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세입에 대한 가감정리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정리하고,
- 세출예산은 인건비, 기초생활보장비 등 법정·의무적경비 과부족분과 경상경비 집행잔액 삭감, 주민숙원사업비 반영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나. 주요내용

- 일반회계 ▷ 1,493억 2,817만 5천원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구 분	예 산 액	구 분	예 산 액
계	149,328,175	계	149,328,175
지 방 세	17,863,000	일 반 행 정 비	43,201,012
세 외 수 입	27,157,389	사 회 개 발 비	86,597,735
지 방 교 부 세	10,972,717	경 제 개 발 비	14,667,746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	29,781,684	민 방 위 비	278,439
보 조 금	63,553,385	지 원 및 기 타	4,583,243
지 방 채	-		

○ 특별회계 ▷ 93억 5,649만원

- 의료보호기금 ----- 1억 9,401만원
-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 15억 2,997만 1천원
- 주 차 장 ----- 39억 9,324만 1천원
- 주거환경개선사업 ----- 1억 495만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31억 5,431만 8천원
- 흥티마을공영개발사업 ----- 3억 8,000만원

3.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특징

가. 세입·세출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1회추경예산	증 감	
			금액	증감율(%)
총 계	158,684,665	150,176,107	8,508,558	5.67
일반회계	149,328,175	140,888,404	8,439,771	5.99
특별회계	9,356,490	9,287,703	68,787	0.74
의료보호기금	194,010	106,763	87,247	81.7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529,971	1,529,971	0	0.00
주차장	3,993,241	4,011,701	△18,460	△0.46
주거환경개선사업	104,950	104,950	0	0.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3,154,318	3,154,318	0	0.00
홍티마을 공영개발사업	380,000	380,000	0	0.00

나. 일반회계

□ 세입예산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1회추경예산	구성비	증 감	
					금액	증감율(%)
계	149,328,175	100.00	140,888,404	100.00	8,439,771	5.99
지방세	17,863,000	11.96	22,224,000	15.77	△4,361,000	△19.62
세외수입	27,157,389	18.19	24,639,743	17.49	2,517,646	10.22
경상적세외수입	13,322,136	8.92	11,271,690	8.00	2,050,446	18.19
임시적세외수입	13,835,253	9.26	13,368,053	9.49	467,200	3.49
지방교부세	10,972,717	7.35	4,172,717	2.96	6,800,000	162.96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781,684	19.94	34,000,236	24.13	△4,218,552	△12.41
보조금	63,553,385	42.56	55,851,708	39.64	7,701,677	13.79
국고보조금	38,917,361	26.06	33,623,877	23.87	5,293,484	15.74
시비보조금	24,636,024	16.50	22,227,831	15.78	2,408,193	10.83
지방채	-	-	-	-	-	-

□ 세출예산내역

○ 기능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1회추경예산		증 감	
			구성비	금 액	증감율(%)	
계	149,328,175	100.00	140,888,404	100.00	8,439,771	5.99
일반행정비	43,201,012	28.93	43,442,145	30.83	241,133	△0.56
사회개발비	86,597,735	57.99	81,701,256	57.99	4,896,479	5.99
경제개발비	14,667,746	9.82	11,236,882	7.98	3,430,864	30.53
민방위비	278,439	0.19	311,205	0.22	△32,766	△10.53
지원 및 기타경비	4,583,243	3.07	4,196,916	2.98	386,327	9.21

○ 성질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1회추경예산		증 감	
			구성비	금 액	증감율(%)	
계	149,328,175	100.00	140,888,404	100.00	8,439,771	5.99
경상경비	52,285,000	35.01	53,089,434	37.68	△804,434	△1.52
사업예산	90,903,437	60.88	82,045,559	58.23	8,857,878	10.80
채무상환	366,400	0.25	366,400	0.26	-	0.00
예비비등	5,773,338	3.87	5387,011	3.82	386,327	7.17

○ 품목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1회추경예산		증 감	
			구성비	금 액	증감율(%)	
계	149,328,175	100.00	140,888,404	100.00	8,439,771	5.99
인건비	36,619,275	24.52	36,933,791	26.21	△314,516	△0.85
물건비	11,040,012	7.39	11,393,661	8.09	△353,649	△3.10
이전경비	71,453,936	47.85	67,380,589	47.83	4,073,397	6.05
자본지출	24,406,989	16.35	19,758,777	14.02	4,648,212	23.52
보전재원	310,000	0.21	310,000	0.22	-	0.00
내부거래	1,281,070	0.86	1,281,070	0.91	-	0.00
예비비 및 기타	4,216,843	2.82	3,830,516	2.72	386,327	10.08

□ 주요 증감 내용	-----	8,440백만원
○ 필 수 경 비	-----	△404백만원
○ 국시비보조사업	-----	7,774백만원
○ 경 상 사 업 비	-----	△480백만원
○ 자 산 취 득 비	-----	△59백만원
○ 경상투자사업비	-----	423백만원
○ 투 자 사 업 비	-----	800백만원
○ 예 비 비	-----	386백만원

□ 명시이월사업내역(19건) ----- 8,849백만원

○ 복식부기 관련 경비	-----	4백만원
○ 인감 본인확인 시스템	-----	9백만원
○ 감천보호수 주변 쉼터조성	-----	70백만원
○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	2,104백만원
○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	320백만원
○ 승학어린이집 이전신축	-----	809백만원
○ 노인요양시설 증축	-----	568백만원
○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	1,039백만원
○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	776백만원
○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	164백만원
○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	599백만원
○ 괴정4동 경로당 신축공사	-----	244백만원
○ 감천옥녀봉 산복도로개설	-----	168백만원
○ 장림2동 영남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	206백만원
○ 괴정3동 신세화백화점~괴정3동사간 도로개설	-----	800백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	101백만원

- 당리동 용정탕~신평아파트간 도로개설 ————— 249백만원
 ○ 감천1동 천마산 산복도로개설 ————— 119백만원
 ○ 괴정2동 대티로~193번지간 도로개설 ————— 500백만원

4.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계	경 상 적 세외수입	임 시 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계	예 산 액	9,356,490	1,695,070	4,354,603	2,224,776	1,082,041
	제1차추경예산	9,287,703	1,713,530	4,354,603	2,156,706	1,062,864
	증 감 액	68,787	△18,460	0	68,070	19,177
의료보호 기 금	예 산 액	194,010	300	31,893	124,776	37,041
	제1차추경예산	106,763	300	31,893	56,706	17,864
	증 감 액	87,247	0	0	68,070	19,177
주 차 장 외 4건	예 산 액	9,162,480	1,694,770	4,322,710	2,100,000	1,045,000
	제1차추경예산	9,180,940	1,713,230	4,322,710	2,100,000	1,045,000
	증 감 액	△18,460	△18,460	0	0	0

○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 분		계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등
계	예 산 액	9,356,490	1,365,749	4,585,763	3,404,978
	제1차추경예산	9,287,703	1,359,509	4,583,675	3,344,519
	증 감 액	68,787	6,240	2,088	60,459
의료보호 기 금	예 산 액	194,010	23,187	138,630	32,193
	제1차추경예산	106,763	23,187	53,542	30,034
	증 감 액	87,247	0	85,088	2,159
주 차 장 외 4건	예 산 액	9,162,480	1,342,562	4,447,133	3,372,785
	제1차추경예산	9,180,940	1,336,322	4,530,133	3,314,485
	증 감 액	△18,460	6,240	△83,000	58,300

5. 검토의견

가. 예산안총괄

-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586억 8,466만 5천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93억 2,817만 5천원, 의료보호기금 등 6개 특별회계 93억 5,649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분야〉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493억 2,817만 5천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450억 2,038만 9천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09억 7,271만 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97억 8,168만 4천원 국시비 보조금이 635억 5,338만 5천원 등으로 편성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99%인 84억 3,977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2005. 8. 31 세제개편으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69억 3,900만원 증가 하였으나 국세로 전환된 종합토지세의 기정 예산인 117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사업소세 3억원, 과년도수입 1억원이 증가하여 지방세 47억 6,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수입의 부산신항만 건설 공유수면 점용 사용료 추정액 19억원 등 점용료 22억 8,504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1억 7,433만 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시세 징수금 정산금이 3억 4,500만원 신규증액 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원 감소 하였습니다.

-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수입 1억 5천만원, 국공유재산매각수입 9,200만원이 증가하고 건축법 과태료등 잡수입이 1억 3,48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세제개편으로 인한 재산세 부족분 보전을 위해 65억원이 배정 되었으며 특별교부세는 괴정3동 신세화백화점~괴정3동사간 도로개설 공사에

3억원이 계상 증액되었으며 재원조정 교부금은 부동산 거래의 위축으로 인하여 46억 5,011만 6천원이 감소하였고 도시기초 시설물 선진화 평가 우수단체상 사업비 3억원, 행정구역 경계조정 인센티브 1억 3천만원 등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4억 8,000만원이 신규 증액 되었습니다.

- 국고보조금 52억 9,348만 4천원과 시비보조금 24억 819만 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 정리사업비 21억 430만원,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 3억 2,019만원, APEC 정상회의대비 도시환경 정비사업 2억 3,500만원, 실비노인 전문요양시설 신축비 7억 7,619만 3천원, 장애전담 보육시설 신축비 2억 8,71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 32억 6,560만 6천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6억 2,390만원 증액되는 등 저소득 주민보호와 노인복지,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보장적 경비가 신설 및 증액되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만 5세아 무상 보육료 등이 감소 되었습니다.

〈세출분야〉

-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493억 2,817만 5천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432억 101만 2천원, 사회개발비 865억 9,773만 5천원, 경제개발비 146억 6,774만 6천원, 민방위비 2억 7,843만 9천원, 지원및기타 경비 45억 8,324만 3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성질별로는 정상적 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은 소폭 감소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주민숙원사업 등 생활기반시설과 저소득주민보호 등에 88억 5,787만 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이를 다시 품목별로 보면, 기본경비인 인건비, 일반 운영비인 물건비 등은 감소 되었으며, 이전 경비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계속 시행중인 도로건설사업비가 증액 및 신설되었으며, 기타 투자사업을 제외한 인건비 등 일반운영경비와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지원사업과 시행중인 투자사업비등을 가감정리하는 것이 대부분 입니다.

- 분야별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필수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연금부담금등이 4억 4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 정리사업비와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비 24억 2,149만원이 증액 및 신설되고, 사회복지분야의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 37억 3,118만 5천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경로연금과 노인요양시설 신축 및 운영비 14억 12만 3천원이 신설 및 증액되었습니다.
- 투자사업비는 괴정2동 대티로~193번지간 도로개설비 5억원과 괴정3동 신세화 백화점~괴정3동사간 도로개설비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낙동로 대티터널~대티역간 보도정비사업비 1억 5,700만원, 낙동로 가로화단 조성 1억원 등이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에 의한 상 사업으로 신규 편성되는 등 구민 편의와 불편 해소 등에 역점을 들어 편성되었습니다.
- 또한 2005년에 시행완료하지 못하고 2006년으로 이월하는 명시이월 사업비가 19건 88억 4,937만 1천원으로 세부내역별로는 소형기선 저인망 정리사업 21억 430만원,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 3억 1,965만 7천원, 승학 어린이집 이전 신축비 8억 879만원, 노인요양시설 증축 5억 6,763만 8천원, 실비노인전문 요양시설 신축 10억 3,913만 8천원, 노인전문요양 시설 장비보강 5억 9,970만 4천원, 괴정3동 신세화 백화점~괴정3동사간 도로개설 사업비 8억원을 비롯한 도로개설 사업비 7건 20억 4,219만 2천원 등이 년내 시행 완료 되지 못하고 명시이월 되는 것은 절대 공기부족,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지연 또는 교부금등이 늦게 배정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주민편의와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인만큼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겠습니다.

다. 특별회계

-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는 93억 5,649만원으로 1회추경시 보다 6,878만 7천원인 0.74%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 1억 9,401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5억 2,997만 1천원, 주차장 39억 9,324만 1천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 495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1억 5,431만 8천원, 흥티마을 공영개발사업 3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8,724만 7천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 진료비 8,508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건비와 수당 등 2,543만원이 증액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5,300만원, 주차선 설치 및 정비 3,0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기타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 2006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없으며 계속 사업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과 흥티마을 공영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체적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등 세입재원별 목표액초과와 미달된 세입예산을 가감정리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액 가감정리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 과부족분과 계획절감 부분 및 불요 불급한 경비등을 삭감정리하여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3억 8,632만 7천원 추가계상은 부동산 경기위축과 세계개편 등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할 때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가용재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 끝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총칙 제7조의 본추경 후 2005년 12월 31일까지 내시되는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한다는 조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연도 세입세출로 편성심의 하여야 하나 심의 일정 편성이 불가능하므로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후보고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 요지 : 없음

7. 심사 결과

-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 원안가결
- 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 원안가결
- 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 원안가결
- 라.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 원안가결